

2005. 10.

제101회 임시회

-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광희

검 토 보 고 서

□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,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설치근거 및 사용료 등을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충주시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함 (안 제2조 제1호)
- 나.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를 법인·단체·개인으로 함(안 제26조제1항)
- 다.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(전용료 및 이용료) 징수기준 신설(안 별표)

3. 근거법령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8조, 제9조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
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
「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」에
동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임
- 다목적체육관의 경우는 충주체육관과 유사한 시설로써
이에 준하는 사용료를 책정하였고,

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관내 사설 체육시설의 사용료를
감안하여 책정하는 등

기존 시설과의 형평성과 사경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
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

이상으로

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